

—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 조례 운영에 있어 부적절한 규정 개정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9조제1항제3호를
 - 지출원 : 가정복지업무담당 ⇒ 출납원 : 노인업무담당주사로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('98. 4.22)
- 타 기금관련조례
-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운용)

5. 검토의견

- 현 조례 제9조에 대한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 지출원의 규정만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하기 위해 지출원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- 타 기금 관련 조례 및 준칙과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저촉사항 없음.
- 조례 제10조(결산 및 보고) 중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80일 이내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임. (지방재정법 개정'99)